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643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일자 : 2018. 12. 5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## 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간사를 보건행정담당에서 보건과장으로 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제3조제4항 중 협의회 간사 부분을 보건과장으로 개정함.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(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(4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(5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 : 2018. 9. 19. ~ 10. 10.(21일간)

(나)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(6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보건행정담당”을 “보건과장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          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  정   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(구성) ①~③ (생략)<br>④ 협의회는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<br><u>보건행정담당</u> 이 된다. | 제3조(구성) ①~③ (현행과 같음)<br>④ -----<br><u>보건과장</u> ----- |

□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**제10조(건강생활실천협의회)** ①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·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